

의안번호	2214308
의 퇴 인	오세희 의원
회 답 일	2026. 1. 12.
추계번호	25A6229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위원회의 설치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100만원, 2031년 1,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5,500만원(연평균 3,1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안 제5조)	50	—	—	50	—	100	2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위원회(안 제7조)	11	11	11	11	11	55	11
합 계	61	11	11	61	11	155	31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기본계획)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위원회)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인공지능 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듬(제1항)	
3	안 제10조(지원사업 절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함(제1항) －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료를 활용한 업종·분야별 수요조사 － 2. 사업계획의 공고 및 신청접수 － 3.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선정 － 4. 전담기관과 지원대상 간 협약 체결 － 5. 사업 수행 및 이행점검 － 6. 성과평가 및 결과공표 － 7. 사후관리 및 환수	의무규정
4	안 제11조(업종·분야 특화 인공지능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5	안 제12조(소상공인 맞춤형 인공지능 전환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업종·경영환경·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인공지능 솔루션의 개발·보급 및 현장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13조(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연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직자 및 신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음(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등과 연계하여 업종·분야별 특화된 인공지능 융합인력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2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성된 전문인력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연계·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인력의 인건비·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직자에 대하여 직무전환 및 고급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7	안 제14조(인공지능 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력지원 체계)	인공지능 인력수요 충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별 인공지능 인력 수요조사 및 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 - 2. 인공지능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사회보험료 등 인건비 일부 지원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세제 혜택 등 인력 유치 촉진 - 4. 청년·경력전환자 대상 중소기업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8	안 제15조(금융·세제·투자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정책자금 융자 - 2. 금융기관의 인공지능 전환 전용 특례보증·금리우대 상품 개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도입·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제지원을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음(제2항) - 1.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2. 인공지능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3.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 및 전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4. 인공지능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분야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 전용펀드 조성, 민간투자 연계 등의 투자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9	안 제16조(오픈소스 기반 협력 촉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정보를 공개·공유하는 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시 우대할 수 있음(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방형 인공지능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인프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10	안 제17조(데이터 확보·활용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하여 데이터의 품질 향상·가공·표준화 및 거래·유통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비식별화, 익명화,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1	안 제18조(데이터 관련 특례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데이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1.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술지침의 마련 2. 인공지능 전환 등에 관한 법률·기술 지원 및 교육 3. 산업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및 전환 가이드라인	재량규정
12	안 제20조(인공지능 규제배심원제 운영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과 관련하여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은 규제배심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3	안 제21조(인공지능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플랫폼 및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4	안 제22조(인공지능 전문기업의 육성 및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전문으로 하는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업종·분야 특화 인공지능 솔루션의 개발 및 제공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생산·서비스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컨설팅 및 기술지원 3.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및 플랫폼 구축 4. 인공지능 전환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파견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된 인공지능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 1. 연구개발비, 설비투자비 등 재정지원 － 2. 기술보증 및 정책자금 융자 － 3.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 4. 세제감면 및 공공조달 참여 우대	
15	안 제23조(인공지능 기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벤처기업 등을 육성·지원할 수 있음(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 1. 창업자금 및 초기운영자금 지원 － 2. 인공지능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매칭·공동사업화 지원 － 4.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재량규정
16	안 제25조(시·도별 인공지능 활용 시행계획)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7	안 제26조(시·도별 특화산업과의 융합·협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도별 주력·특화산업과 인공지능의 융합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시·도지사와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각 시·도 내의 대기업·중견기업과 인공지능 전문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공동기술개발 및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실증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8	안 제28조(지식재산·데이터·영업비밀 보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데이터·영업비밀의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진하여야 함(제1항) － 1. 데이터 저작권, 기술 오용 방지, 영업비밀 유출 방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 2. 지식재산·데이터 보호 관련 교육·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 3.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조사 및 구제 지원체계 구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9	안 제29조(성과평가 및 결과공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고 다음 연도의 지원정책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함(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기본계획)	○	—
2	안 제7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위원회)	○	—
3	안 제10조(지원사업 절차)	X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4	안 제11조(업종·분야 특화 인공지능 지원)	X	
5	안 제12조(소상공인 맞춤형 인공지능 전환 지원)	X	
6	안 제13조(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연계)	X	
7	안 제14조(인공지능 인력지원 체계)	X	
8	안 제15조(금융·세제·투자 지원)	X	
9	안 제16조(오픈소스 기반 협력 촉진)	X	
10	안 제17조(데이터 확보·활용 지원)	X	
11	안 제18조(데이터 관련 특례 등)	X	
12	안 제20조(인공지능 규제배심원제 운영 등)	X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3	안 제21조(인공지능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X	
14	안 제22조(인공지능 전문기업의 육성 및 지원)	X	
15	안 제23조(인공지능 기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X	
16	안 제25조(시·도별 인공지능 활용 시행계획)	X	
17	안 제26조(시·도별 특화산업과의 융합·협력)	X	
18	안 제28조(지식재산·데이터·영업비밀 보호)	X	
19	안 제29조(성과평가 및 결과공표)	X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수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관련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
- 제정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현행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2]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	회계기금 (소관)	2024 결산	2025 예산	2026 예산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일반회계	-	-	64,500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제조혁신 구축 지원 / 선도형 제조혁신 / 자율형공장)	일반회계	6	32,000	95,000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제조혁신 구축지원 / 선도형 제조혁신 / 대중소 상생형)	일반회계	-	4,000	10,000
기술혁신기반조성(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일반회계	3,941	7,103	7,103

세부사업 (내역)	회계기금 (소관)	2024 결산	2025 예산	2026 예산
데이터인프라구축(정보화)	일반회계	6,900	5,836	5,922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R&D)	일반회계	43,665	51,690	23,326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일반회계	10,888	10,888	10,888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일반회계	4,045	3,829	4,159
중소벤처행정정보화(정보화)(대민정보시 스템 통합운영체계 구축)	일반회계	3,263	7,353	10,464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일반회계	—	—	3,600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일반회계	2,000	6,000	6,000
창업사업화지원(창업패키지(초기·도약))	일반회계	—	21,000	20,500
창업사업화지원(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AX 특화 지원))	일반회계	—	15,900	20,000
창업성장기술개발(R&D)(TIPS)	일반회계	—	—	60,900
투·융자연계기술개발(R&D)(스케일업팀 스)	일반회계	—	—	36,680
표준공정 기반 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R&D)	일반회계	—	—	3,000
제도약속진(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35,000	49,000
창업성공패키지(AI딥테크 특화과정)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	19,500
창업성공패키지(스타트업AI기술 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2,700	2,300	2,900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 신성장기반자금(AX스프린트우대트랙)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	140,000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 기금	—	—	14,360
소상공인재기지원(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 기금	—	—	5,000

자료: 중소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본계획(안 제5조)

- 비용추계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3년 주기 연구용역비로 함
 - 제정안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은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고려할 때 2027년 및 2030년에 각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 유사 연구사례로는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및 혁신성장을 위한 법령체계 연구”(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5,000만원), “경기도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실태조사 용역”((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2024년, 5,200만원) 등이 있음
- 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안 제5조)	50	—	—	50	—	10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위원회(안 제7조)

- 비용추계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 관련 비용은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금액으로 함
 -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를 정원의 과반인 11명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 안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안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관련 관계 부처 간 협력·조정
 3.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성과 평가
 4.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25만원으로 할 경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위원회(안 제7조)	11	11	11	11	11	55	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